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9. 8. 20
- 나. 제출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9. 8. 2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제정위원회(99. 8.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가. 제안이유

○ 1999. 3.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농지법에 따라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중 임차료 상한을 상위법에 맞추어 삭제

○ 조례 제4조(위원회의 기능)제3항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항목을 삭제하려고 함.

나. 주요골자

○ 임차료 상한제도를 폐지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며

○ 위원회의 기능 중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내용을 삭제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임차료 상한제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 현재 각 구별로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으며, 동별 임차료 상한선을 결정하였는데 땅주인과 임차인 당사자간 합의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규제완화 차원의 조례 개정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7호
의결년월일	99. 8. 27 (제72회)

제출년월일 : 1999. 8. 20

제 출 자 : 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사유

○ 1999. 3.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농지법에 따라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중 임차료 상한을 상위법에 맞추어 삭제

○ 조례 제4조(위원회의 기능)제3항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항목을 삭제하려고 함

□ 주요골자

- 임차료 상한제도를 폐지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며
- 위원회의 기능 중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내용을 삭제함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u>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u>	제4조(위원회의 기능)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삭제)
<u>제11조(임차료의 상한)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 2와 같 다.</u> (별표 2) 농지임차료상한(제11조 관련) (생략)	(삭제) (삭제)